

■ 최신 법령 ■

[행정]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분석 ②

정원 변호사 | 박호경 변호사

지난 뉴스레터에서는 입법 예고된 행정소송법 개정안 중 의무이행소송 도입, 원고적격 확대, 가처분 제도 도입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집행정지, 소변경·이송, 당사자소송,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 변경, 국가를 상대로 한 가집행을 중심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1. 집행정지(안 제24조 이하)

개정안은 집행정지의 요건을 완화하고 담보부 집행정지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집행부정지원칙은 유지하되, 그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현행법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어 금전적 손해가 우려될 경우, 개정안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 하에서는 특별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금전상 손해는 사후적으로 회복 가능한 손해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의하면, 금전적 손해의 경우에도 집행정지가 허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아가 일부 학자들은 1차적 권리보호수단으로서 존속보호를 지향하는 행정소송의 본질을 고려하여, 재산적 손해 이외의 법익 침해의 경우에도 집행정지가 허용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김중권, "권리구제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전환의 마련", 행정소송법 개정 공청회 자료집, 법무부, 50쪽 이하).

2. 소변경·이송 허용범위 확대(안 제22조)

개정안은 취소소송을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이나 해당 처분 등에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당사자소송 또는 민사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민사소송을 해당 청구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관한 취소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대 행정에는 공법상 계약 형식으로 진행되는 행정영역이 증가하고, 전문성을 가진 준정부기관, 공기업 등에 행정권한을 위탁·위임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구분이 어려워지고, 잘못 제소할 경우 제소기간 도과, 소각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소 변경·이송 허용범위 확대는 소송과정에서의 국민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행정법원과 지방법원 중 관할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 고등법원이 관할 법원을 지정하는 제도가 도입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제9조).

3. 당사자소송 활성화, 가집행금지조항 삭제, 처분변경 시 소변경

개정안은 당사자 소송을 “행정상 손실보상·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이나 그 밖의 공법상 원인으로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규정하였습니다(안 제3조, 제48조 이하). 이로써 편의상 민사소송으로 다루어지던 행정상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은 행정소송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관할 혼란 방지를 위하여 개정안 공포 후 3년 뒤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안 부칙 제1조).

현행법은 국가를 상대로 한 가집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제43조). 이는 재산권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차원에서 소송당사자 일방을 차별하는 것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개정안은 위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함으로써, 제소기간과의 균형을 유지하였습니다(안 제23조 제2항).

4. 다운로드 : 「행정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